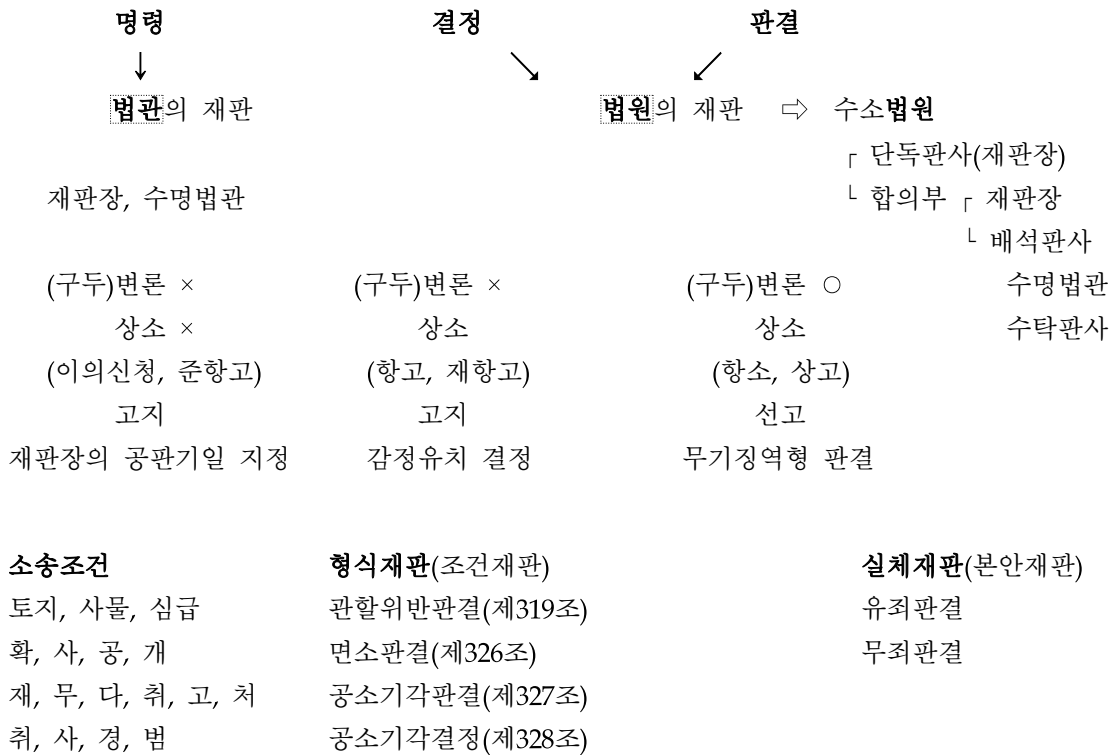


## 재판의 종류



### (1) 형식재판

사건의 실체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않고 절차적·형식적 법률관계인 소송조건을 판단하는 재판이다. 형식재판에는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. 다만 면소판결만은 기판력이 인정된다.

#### 제319조(관할위반의 판결)

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‘판결’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.

#### 제326조(면소의 판결)

다음 경우에는 ‘판결’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.

1. **확정판결**이 있을 때
2. **사면**이 있을 때
3. **공소**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
4. 범죄후의 **법령개폐**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

#### 제327조(공소기각의 판결)

다음 경우에는 ‘판결’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.

1. 피고인에 대하여 **재판권이 없는** 때
2.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**무효인** 때
3.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**다시**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(같은 법원에 이중기소)
4. 제329조(공소취소와 재기소)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
5.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**고소의 취소**가 있을 때
6.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**처벌**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

제328조(공소기각의 결정)

① 다음 경우에는 ‘결정’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.

1.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
2.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
3. 제12조(동일사건과 수개의 사건의 소송계속) 또는 제13조(관할의 결합)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을 할 수 없는 때(다른 법원에 이종기소)
4.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

제329조(공소취소와 제기소)

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(2) 실체재판

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여 구체적 형벌권의 존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(본안재판). 실체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된다.

- ① 유죄판결 : 사형, 징역, 금고, 자격상실, 벌금, 구류, 과료, 선고유예, 집행유예, 형면제
- ② 무죄판결



As soon as you trust yourself, you will know how to live. - Goethe

왜 그런가? 하는 의문을 갖고 있어야 한다.